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3. 8.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2005년 2월 18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 다. 회부일자 : 2005년 3월 2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11회(임사회) 제2차 위원회(2005년 3월 3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 유 근)

가. 개정이유

- 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여성발전기본법의 범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 등 영등포구의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안 제4조)
-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함 (안 제7조)
- 구청장은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 등 관련사업을 추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
- 구청장은 성차별 개선을 위하여 창구운영, 교육 등 예방조치와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 제10조)
- 구청장은 모성보호와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안 제12, 13조)
-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5조)
- 구청장은 여성정책 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고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야 함 (안 제17조)
-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 (안 제27조)
-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함 (안 제27조)
-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등의 지원에 사용함 (안 제28조)

-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함(안 제29조)
-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둠(안 제35조)
-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사용내역을 정리함(안 제36조)
-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안 제37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석)

-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를 보면 2003. 1. 1 개정,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게 여성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하려는 법정사항임.
- 본 조례 구성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선 언적 의미에 그쳐왔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의지를 조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촉진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원을 통한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조례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18조에 여성정책 수립 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제30조에서는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고는 하나 운용면에서 2개의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 제27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 에 의거 설치 운용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향후 기금 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여성의 지위향상과 우리구의 여성정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여성위원회 구성원 중 구의회 의원의 자문역할을 확대하고 인원 및 추천자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안)제19조②항4호 “영등포구의회 의원”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으로 수정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4호
----------	------------

제안년월일 : 2005. 3. 3
제 출 자 : 박승석 의원 외 1인

1. 수정이유

여성의 지위향상과 우리구의 여성정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여성위원회 구성원 중 구의회 의원의 자문 역할을 확대하고 인원 및 추천자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안)제19조②항4호 “영등포구의회 의원”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수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9조②항4호 “영등포구의회 의원”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으로 수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19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2. 여성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4. 영등포구의회의 의원 	<p>제19조(구성)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년월일 : 2005. 2.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기존의 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위원회구성에만 치우쳐 있어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제반사항을 수행하는 역할을 다 한다 할 수 없으므로 전면개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 등 영등포구의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함(안 제7조)
- 다. 구청장은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 등 관련사업을 추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라. 구청장은 성차별 개선을 위하여 창구운영, 교육 등 예방조치와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조)
- 마. 구청장은 모성보호와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 13조)
- 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 사. 구청장은 여성정책 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고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7조)
- 아.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안 제27조)
- 자.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함(안 제27조)
- 차.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등의 지원에 사용함(안 제28조)
- 카.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획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함(안 제29조)
- 파.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둠(안 제35조)

하.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사용내용을 정리함
(안 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33조

나. 예산조치 : 2005년 추경 예산안 편성예정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5. 1.20 ~ 2005. 2. 8)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여성정책

제4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 가. 남녀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정책
 - 가. 남녀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 ·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 · 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정보 제공 등) ①구청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여성관련 정보를 수집 · 축적 ·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주간 행사) ①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 구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7조(구정참여 확대) ①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 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보육 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남녀평등의식 제고) ①구청장은 남녀평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성차별 개선 등) ①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당해 사례를 접수·처리 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복지증진 등) ①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
2.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3.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구청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구매 촉진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구청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 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보육)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수준향상, 방과 후 보육 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법 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와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여성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정책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2. 여성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3. 여성관련 사회단체대표
4. 영등포구의회 의원

제2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25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여성발전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1조(심의회 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